

건설대학원 장학 내규

2012.06.18. 제정

2015.04.02. 개정

제1장 건설대학원 장학금

제1조(성적장학금) ① 신입생 성적장학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
2.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음
 - 가. 신입생 수 9명이상인 학과의 수석자는 수업료의 40%, 차석자는 수업료의 20%
 - 나. 신입생 수 8명이하인 학과의 수석자는 수업료의 20%
 - 다. 신입생 수 3명이하인 학과는 해당사항 없음단, 최종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배정하며, 특별장학금A 대상자와 직계장학금 대상자는 등록인원에서 제외함

② 재학생의 성적장학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선발
2.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음
 - 가. 재학생 수가 11명이상인 학과의 수석자는 수업료의 40%, 차석자는 수업료의 20%
 - 나. 재학생 수가 10명이하인 학과의 수석자는 수업료의 20%
 - 다. 재학생 수가 5명이하인 학과는 해당사항 없음단, 재학생 인원 기준은 5차 학기 이상을 포함하지 않으며, 특별장학금A 및 직계장학금 대상자는 재학생 수에서 제외함
3. 동점자 발생 시 신청학점, 총점, 연장자순으로 선발
4. 건설영어(필수) P/F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수석자를 제외한 총점평균이 우수한 학생을 차석으로 선발[※ 총점평균 = 총점/학점 (건설영어 수강생은 4학점)]. (개정 2012.1.26.)

제2조(봉사장학금) 봉사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
2. 지급금액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 가. 원우회장은 수업료 65%
 - 나. 원우회 간부는 800,000원씩 6명에게 지급함

제3조(직계장학금) 직계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본교에 재직자 및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배우자, 자녀
2.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음

- 가. 본인인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 나. 배우자 및 자녀는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제4조(공로 및 특별장학금) 공로 및 특별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특별장학금A

- 가. 공무원, 군인(영관급 이상), 공사 재직자(차장급 이상)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선발
- 나. 지급금액은 등록금의 40%
- 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공공기관 지정에 따름

2. 특별장학금B

학과에서 추천한 자(봉사, 성적우수, 가계곤란, 기타)는 예산범위 내에서 재학생 수에 따라 학과별로 배분하여 수업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3.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및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개정 2012.6.18.>

본 제정 내규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4.2>

본 개정 내규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